

#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54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# 제안이유

- 시장 지시사항 :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철저(2019.2.15.)
-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위원회 활동상황 점검)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 정비계획[자치행정과-2343 (2019.3.8.)호]에 의거 추진

### 주요내용

- 심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함  
(안 제8조 제10항)

###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# 예산수반사항 : 붙임4 (비용주체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#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11. 23. ~ 2020. 12. 14. (22일간)

#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불임 1 >

##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⑩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,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정보콘텐츠과
임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정보콘텐츠과장 장 동진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공공빅데이터팀장 김수진
	담당자 성명 · 전화	김수진 (행정 2083)

< 불임 2 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· ⑥ (생 략)</p> <p><u>⑦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</p> <p>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p> <p>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</p> <p>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p> <p>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·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⑨ 위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</p>	<p>제8조(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

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⑩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,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.